

의안번호	제543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1일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3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1일
발의자 : 김호경, 이동우, 김종필,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 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 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 기록장치의 설치 사업
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4. (생략)

②~⑤ (생략)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⑧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⑨ (생략)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3. (생략)

②~⑤ (생략)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⑤ (생략)

- 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2. 비용발생 요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대상(안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보수교육, 자격유지검사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4.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결과
 -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에 약 52,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6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도비 260,000천원) ※ 자부담 420,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재원조달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자체 수입	소 계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지방세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세외수입	-	-	-	-	-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